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

권재열 교수(숭실대학교), 박준우 교수(명지대학교),
임근영 연구원(지식재산권 연구센터)

1. 머릿말

목 차

- 1. 머릿말
- 2. WTO/DDA 지재권 협상 배경 및 내용
- 3. WTO/DDA 지재권 의제별 검토
 - 가. 공중보건 관련 이슈
 - 나. 지리적 표시 보호
 - 다. 생명공학 관련 이슈
- 4. WTO/DDA 지재권 협상의 미래
- 5. 맺음말

1995년 1월 1일 WTO/TRIPs 협정의 발효로 지식재산권이 다자간 통상 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TRIPs 협정은 WTO라는 집행력을 가진 국제기구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최소한 실체법적인 통일화로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란을 일단락 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¹⁾

따라서 그 이후에는 각국에 있어서 TRIPs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그 주안점을 두게 되었으며, TRIPs 이사회는 각국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0년 개도국에 대한 과도기간이 종결됨과 발생된 이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 법령에 대한 TRIPs 이사회의 심의를 받았다.²⁾

한편, 그 동안 국가간 이해관계의 변동과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등 기술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선,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

1) 김원준, '최근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및 주요 이슈 고찰 -WTO, WIPO,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 21」 통권 제59호(특허청, 2000. 3), 3면.

2)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2000 WTO/TRIPs 지식재산권법령 검토회의 결과 보고서」(2000. 12).

라, 인터넷상 특허권 침해의 문제와 상표사용의 문제, 인터넷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 등 기존 권리관계의 해석과 집행에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등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허여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경계하는 시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유전자 원 등 새로운 분야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TRIPs 협정 내 설정되어 있는 기존 지재권 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게 되었다.³⁾

이처럼 새로운 이슈 못지 않게 국가별로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난 UR 협상 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 회의에서 21세기 무역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 라운드가 출범하게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최초의 무역협상인 이 무역협상은 도하개발의제(DDA : Doha Development Agenda)로 명명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하여 7개 협상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그 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에서 DDA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각료회의가 결렬되고 말았다.⁴⁾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2003년 “지재권 관련 DDA, 협상의제에 대한 연구(2003-1)”의 목적은 지재권 관련 DDA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하여 중장기적이고 총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동 연구보고서는 WTO/DDA 지재권 관련 협상의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협상 관련기관들이 DDA 협상에 대응한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변화내용 검토 및 대응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2. WTO/DDA 지재권 협상 배경 및 내용

DDA란 “Doha Development Agenda” 즉 “도하개발아젠다”를 일컫는 것으로 2001년 11월 14일 종료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체제를 말한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에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체제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에 양해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⁵⁾

제 4차 WTO 각료 회의는 각료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과 이행 관련 결정문(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 그리고 공중보건과 지재권에 관한 별도선언문(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은 21개 분야와 현행 협정의 이행문제들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명시된 대표적인 협상분야를 보면 이행문제, 농업,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시장접근, 반덤핑,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또한 협상분야의 하나로 명기되어 있다. 각료선언문에

3) 박진석, “뉴라운드 출범과 TRIPs 협정의 과제(상)－TRIPs 기실정의제와 신규의제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21」통권 제68호(특허청, 2001), 4면.

4)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5차 WTO 각료회의 참석결과보고”, (2003.9), 2면. [이하 ‘제5차 회의결과보고’로 인용함]

5) 외교통상부 발간 DDA협상관련용어집' 참조.

마르면 DDA 협상은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on Committee) 및 그 부속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DDA 의제들에 대하여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⁶⁾, 이는 DDA 협정상 특별한 점으로 지적된다.⁷⁾

여기에서 지재권 관련 DDA 협상 의제라고 하면,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각종 선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이슈로서 WTO에서 TRIPs 협정과 관련되어 이슈가 되어오고 있는 기 설정의제(Built in Agenda)⁸⁾ 플러스 새로이 드러난 다른 문제, 특히 공중보건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문제를 말한다. 이번 DDA 협상 의제 중 지재권 분야에서는 협상의제와 우선 논의과제로 진행되고 있다.⁹⁾ 유일하게 DDA 협상 의제로 채택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 GI)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는 TRIPs 특별회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말까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분야인 지리적 표시 특별보호 품목의 확대, 생명공학 관련 문제(특히 TRIPs 협정과 생명다양성협약간의 관계), 비위반제소 문제 등은 TRIPs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었다.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DDA 지재권 협상 의제 중 지리적 표시의 다자통보 및 국제등록 의제와 TRIPs 협정 관련 생명공학 의제를 중점으로 다루

었다. 이미 지재권 관련 공중보건 이슈는 2003년 8월 30일 의장성명이 채택되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었고¹⁰⁾, 비위반제소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동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면 관계상 WTO/DDA 지재권 협상의제 중 타결된 공중보건 이슈와, 지리적 표시보호 및 생명공학 관련 의제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3. WTO/DDA 지재권 의제별 검토

가. 공중보건 관련 이슈

AIDS, 말라리아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아프리카 빈국들의 보건 위기가 더 이상 국내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를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의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중보건과 지식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선언문을 이끌어 내었고, 당초 목표는 2002년 말에 협정을 완성하는 것이었다.¹¹⁾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쟁점은 국내에서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TRIPs 협정의 강제실시권 조항(Article 31(f))¹²⁾의 국외적용 문제와 질병의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협상은 미국과

6) 각료선언문 para 46, para 47 참조.

7) 성기철, “지식재산권 DDA 협상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지식재산 21’, (특허청, 2003. 1), 23면.

8) 기설정의제(BIA : Built in Agenda)라 함은 과거 UR 협상의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회원국간 추후의 협의부분을 협정문상에 미리 설정해 놓은 의제로서 2001년 카타르 도하의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DDA 지재권 관련 의제 이전부터 TRIPs 이사회 내에서 논의되어온 시안을 말한다. 현재 협정문상의 기설정의제로서 대표적인 것은 지리적표시의 국제적인 디자등록소의 설치문제, 동식물 특허의 보호와 관련한 생명공학 보호문제, 지재권 분야의 비위반제소 문제 등이 있다.(박진석, 일의논문, 5면.)

9) 최낙균, 윤미경 외, ‘DDA 협상 총점검 -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75면.

10) WTO, press release, “The General Council Chairperson’s statement”, 2003년 8월 30일, (http://www.wto.int/english/news_e/news03_e/TRIPs_stat_28aug03_e.htm)

11)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선언문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para. 6.

나머지 국가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나머지 2002년 12월 협상타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¹³⁾ 미국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권이 AIDS, 말라리아, 결핵 등과 같은 유행성 전염병(infectious epidemics)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에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23개의 질병 목록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⁴⁾ 이에 반해서, 몇몇 국가들은 비응급 상황을 포함한 모든 보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행 협정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몇몇 회원국들은 제조 능력 혹은 재정적 자원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제한된 예외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¹⁵⁾ 이러한 교착상태에서 WTO 회원국들은 2003년 8월 30일, 국내에 의약품 제조 능력이 없는 빈국들이 강제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일반의약품(모방의약품)을 좀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변경을 가하기로 동의하면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에 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협상 타결은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¹⁶⁾, WTO의 이번 결정은 WTO 지재

권 협정 조항의 회원국 의무를 면제해 준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TRIPS 협정 제31조(f)항은 강제실시권에 의한 생산이 국내 시장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으로 인하여 국내 제약시설이 없는 국가들이 특허 의약품 생산 국가로부터 강제실시권에 의해서 생산된 저렴한 일반의약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WTO 회원국 정부는 동 조항에 의한 의무의 면제를 동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되도록 동의하였다. 이번 2003년 8월 30일 협정으로 WTO 회원국 어느 국가라도 이번 결정문에서 제시된 조건 내에서 강제실시권을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제품 혹은 활성 성분 및 진단 도구를 포함한 의약품 분야에서 특허된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된 특허 제품이 이번 결정에 해당된다. 하지만, 동 결정문은 잠정적 면제 조항의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강제실시권 하에서 특허된 제품에 대한 일반 모방 약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해당 수입국에 동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런 면제 조항은 WTO/TRIPS 협정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동 결정 하에서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23개의 선진국들은 결정문

12) TRIPs 협정 Article 31(f) “강제실시권은 그러한 사용을 허락한 국가의 국내 시장에서만 공급되기 위해서 허용된다”.

13) WTO, GENERAL COUNCIL, “Supachai disappointed over governments’ failure to agree on health and development issues”, (2002. 12. 20), Press/329,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2_e/pr329_e.htm)

14) IPO(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U.S. holds out against allowing compulsory licensing of patented drugs for export and announces moratorium on TRIPs enforcement”, (2002. 12. 23), (<http://www.ipo.org/2002/DailyNewsChron2002.htm>)

15) USTR, “U.S. Announces Interim Plan to Help Poor Countries fight HIV/AIDS and other Health Crises in Absence of WTO Consensus - United States Calls on Other WTO Members to Join in Individually Implementing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2002. 12. 20), (<http://www.ustr.gov/releases/2002/12/02-119.pdf>)

16) “이는 WTO에 있어서 역사적 협정이며, 텁니바퀴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면서, 빈국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다루기 위해서 WTO 지재권 규칙에 대한 융통성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Supachai Panitchpakdi WTO 사무총장은 평하였다. 또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식재산권과 공중보건 관련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올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5차 각료회의에서 다른 문제 해결에 관한 좋은 추진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WTO Press release, “Decision removes final patent obstacle to cheap drug imports”, (2003. 8. 30).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3_e/pr350_e.htm)

에서 제기된 수입 제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선언하였다.¹⁷⁾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수입제도를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도의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¹⁸⁾

나. 지리적 표시 보호

(1) WTO에서의 논의의 근거 및 현황

다자시스템 마련의 논의의 법적 근거는 TRIPs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과 Doha에서 있었던 각료회의의 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이하 ‘도하선언문’이라 한다.)이다. TRIPs 협정은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to facilitate) TRIPs 이사회에서 참여국 내에서 보호되는 포도주의 지리적표시의 통지 및 등록을 위한 다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고(23.4), 도하선언문은 제5차 각료회의까지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을하도록 규정하였다(para. 18).

그리하여 지금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등록 지리적표시의 회원국 내에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위 구대륙과 신대륙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그 다자시스템의 마련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EU(European Union: 유럽 연합)는 구속적 시스템(: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회원국 내에서 보호의무)을 선호하

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시스템(: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각 회원국이 국내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에 불과)을 선호한다. 현재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안(draft)을 제출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안(TN/IP/W/5), EU안(IP/C/W/107/REV.1), 헝가리안(IP/C/W/255)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올해 4월 의장안(JOB(03)/75)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의장안도 회원국간 의견차이가 큰 부분은 Option A(비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미국안), Option B(구속적 시스템을 선호하는 EU 및 헝가리안)로 나누었으며, 등록절차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의 경우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Option B2(헝가리안)와 중재절차 없이 등록을 하는 Option B1(EU안)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지리적표시의 보호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럽의 회원국들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 간의 핵심적인 쟁점은 ①다자시스템의 마련을 명령한 TRIPs 협정 23.4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to facilitate)’의 해석론과 ②다자시스템의 마련 및 회원국내에서의 이행을 위한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TRIPs 협정 23.4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자시스템의 마련을 규정한 것이므로 각 회원국은 국내법원에서 특정 지리적표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자시스템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참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자시스템에 구속력을 인정하는

17)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8) 홍콩,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카타르, 싱가폴, 대만, 터키, 아랍에미리트.

경우에는 TRIPS 협정에는 없는 새로운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리적표시의 보호정도 자체를 TRIPS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TRIPS 협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될 경우 오래 전부터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시행하여 온 몇몇 유럽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다자시스템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의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속적 다자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럽의 회원국들은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실효성의 결여로 인하여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지 못하며, 실제로 비용부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회원국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회원국들은 위와 같은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 우리 정부의 입장 및 다자시스템의 채택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지리적표시의 보호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에 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도주 및 종류주는 물론이고 다른 종류의 상품에 있어서도 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지리적표시가 거의 없는 반면, 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단기간에 막대한 법제마련 및 운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구속적 다자시스템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서 그로부터 얻는 효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는 논리이다.¹⁹⁾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구속적 또는 비구속적 다자시스템 중 어느 것이 채택되더라도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리적표시의 보호정도가 강하게 되어 국내기업이 외국의 저명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내 모기업은 ‘실론티’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지리적표시의 보호로 인하여 ‘실론티’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판매량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실론티’의 소비자들 중 ‘실론티’의 가공지, 생산지, 또는 원료의 생산지를 염두에 두고 그 지정상품을 구매하는 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그 기업은 단지 상품명을 ‘실론티’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 합동 포럼에서 민간 측은 “외국의 유명한 지리적표시를 국내적으로도 보호한다고 해도 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²⁰⁾ 그러므로 지리적표시 분야에는 다른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강화와 관련된 딜레마의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특허 또는 저작(인접)권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또는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결과, 국내 기업보다 선진국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국내기업이 선진국기업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리적표시의

19) 특허청 국제협력팀당관실,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 합동 포럼 결과 보고” (2003.5), 4~5면.

20) 특허청 국제협력팀당관실, 앞의 자료, 4면.

보호강화에는 위와 같은 딜레마가 없다. 즉, 지리적표시의 강화를 통하여 국내 지정상품의 품질관리의 효과는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 생산자들이 보호강화 전보다 더 손해를 입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둘째, 지리적표시의 등록과 관련하여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된다면 그 시스템의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적 비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한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는 현재 우리 1차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존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현재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가 없더라도 국내문제로서 논의되었어야 하며, WTO에서의 협상결과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국내제도정비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치밀한 지리적표시의 보호제도 및 등록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의 1차 산업 생산품 및 가공품의 수입에 대비하여 우리 상품은 거의 경쟁력이 없는 형편이다.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같은 정도의 품질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그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품질에 관한 인식이 소비자에게 심어져야 한다. 그런데 1차 산업 생산품의 경우 이러한 품질관리는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품을 생산·가공하

는 자가 모두 생산과정, 포장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가능하다. 즉,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정 상품의 모든 생산·유통과정이 표준화되고 모든 생산·가공자가 표준화된 생산·가공·포장·유통방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 단체 기타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한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에 출하한 상품에만 등록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상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보호는 1차 산업 생산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국내법제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에서의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강화하여 세계화로 인하여 위기에 빠진 1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방향에서 WTO의 다자시스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대외협상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 아직 지리적표시 보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구속적 다자시스템에 찬성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지리적표시의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시급함을 인정하고 필요한 입법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서²¹⁾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 작업으로²²⁾, 특허청은 2003년 9월 19일에 상표법 개정 공청회를

21) 단체표장 이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 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상표법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

22) 특허청은 개정의 목적을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단체표장권자도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단체표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단체표장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단체표장권자의 감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법 개정 공청회」,(2003. 9. 19), 3면.

열었다. 그러므로 현재 WTO의 다자시스템에 관한 논의는 그 지정상품을 포도주와 종류주에 한정하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보다 많은 1차 산업 상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생명공학 관련 이슈

현재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 중의 하나는 지구촌적인(global) 경제발전을 추구함과 동시에 지역적(local)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있다.

다자간무역협상이 이루어진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의 결과물로서 1994년에 체결되고 지금은 WTO에서 집행 중인 TRIPs 협정은 국제거래를 촉진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199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회담에서 채택되고 2003년 9월 현재 무려 168개국이 서명한 CBD협약에서는²³⁾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

유를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²⁴⁾

그러나 광역적 발전과 국지적 다양성의 보존사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이미 1990년 후반부터 계속하여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사이에서는 갈등양상을 노정하여 왔다. 즉, TRIPs 협정과 CBD협약은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사이에 다양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미국은 CBD협정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인도와 같은 국가의 농부들은 TRIPs 협정 제27조의 요건에 대하여 저항의 표시로 강렬한 시위를 전개한 적도 있다.²⁵⁾

특히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말하자면, 동항이 WTO 발효일로부터 4년 후 검토(review)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견해가 다르다.²⁶⁾

본래 '4년 후 검토'를 규정한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생명공학적 상품수준이 어떻게 발전될지 예견할 수 없어 4년간의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었다.²⁷⁾

이에 대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중국 미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동조항의 review를 review of provision으로 보아 실질적인 검토를

23) <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2003년 9월 9일 방문)

24) CBD 협약의 제1조는 협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The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o be pursued in accordance with its relevant provisions, are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out of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including by appropriat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y appropriate transfer of relevant technologies, taking into account all rights over those resources and to technologies, and by appropriate funding."

25) Charles R. McManis,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11 Cardozo Journal of Comparative Law 547, 547-548(2003).

26)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agraph shall be reviewed four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TO Agreement."

27) Nuno Pires de Carvalho, *The TRIPs Regime of Patent Rights* 185-186(2002).

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본조항의 review를 review of implementation으로 해석하여 체약국의 제도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면서 본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review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장대립은 생명공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이익을 “공유”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의도와 생명공학 “자체”에 대한 보호수준을 확대하고 강화를 꾀하려는 선진국의 계산이 맞물려 있었다.²⁸⁾

그리하여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를 위한 논의는 1999년 4월과 2000년 3월 TRIPs 이사회에 의해 2차례 개최되었다. 그 중에서 2000년 개최된 이사회에서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와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을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하였다.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 규정과 개발과의 관계
-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에 의한 특허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
- 식물변종의 독자적 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
- 생물체의 특허성여부에 관한 윤리적 사항
-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관련성
- 전통지식의 개념과 농부의 권리간의 관계²⁹⁾

2001년 11월 14일 도하(Doha)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는 TRIPs 제27조 제3항(b)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각료선언문 제19항에서 “우리는 TRIPs 이사회가,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또는 제71조 제1항에 의거한 TRIPs 협정의 이행사항의 검토를 포함하는 작업프로그램 및 본 선언문 제12항에 의거한 작업에 따라서 특히, TRIPs 협정과 CBD과의 관계,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 기타 제71조 제1항에 따라 회원국이 제기한 새로운 개발사항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한다. 동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에 따라야 하고 개발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³⁰⁾고 규정하고 있다.

각료선언문 제19항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 볼 때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와 관련하여 쟁점으로 제기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의제들이다.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상의 특허대상이 되는 동·식물과 그러하지 않는 미생물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가의 여부 및 식물변종의 보호를 「식물변종의 보호체계를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 UPOV)에 한정하느냐의 여부 등이 쟁점사항으로 제기되었으며 또한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그리고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를 과제로 삼고 있

28) 문삼섭, ‘WTO 뉴라운드 協商의 論議 展望-知財勸 關聯 議題 中心으로-’, 『지식재산』 21, 통권 제56호(특허청, 1999. 9), 29면.

29) Paul Vandoren, *The TRIPs Agreement: A Rising Star?*, 4 Journal of World Intellectual Property 307, 318(2001).

30) 본 선언문 제19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instruct the Council for TRIPs, in pursuing its work programme including under the review of Article 27.3(b),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TRIPs Agreement under Article 71.1 and the work foreseen pursuant to paragraph 12 of this declaration, to examine, inter ali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and other relevant new developments raised by members pursuant to Article 71.1. In undertaking this work, the TRIPs Council shall be guided by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set out in Articles 7 and 8 of the TRIPs Agreement and shall take fully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dimension.”

다.³¹⁾ 따라서 연구센터의 “지재권 관련 DDA 협상 의제에 대한 연구”(2003-1)에서는 도하각료선언문에서 협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주제인 ①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와 ③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개념상 모호한 것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은 “미생물”의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그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동일한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특허법의 시행령과 대법원판례에서 미생물발명이 특허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생물의 개념도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에서 명백히 하고 있다.³²⁾

이와 관련하여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effective sui generis system”이 UPOV에 한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도 있다. 개발도상국은 UPOV에 한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선진국들은 찬성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UPOV를 모델로 하여 종자산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b)의 재검토 문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대책이나 새로운 법제를 수립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오랜 기간동안 기여하여 온 농민의 수고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식물변종의 최종개발자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 토종종자의 자원을 확인하고 목록화하여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TRIPs 협정과 CBD가 서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개발도상국은 양자간의 충돌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TRIP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은 그 반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은 선진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CBD의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TRIPs 협정이 없다고 해서 양자가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CBD에는 지식재산권제도의 규범체계를 파괴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TRIPs 협정이 회원국에게 생물다양성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기술에 의한 혁신이 반드시 생물다양성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통지식은 특허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별입법을 통해 전통지식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전통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하여 선행기술로 보자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입법 주장의 경우 예컨대, 이익공유의 방법이나 규모 및 귀속주체 등이 문제되며, 데이터베이스화 주장의 경우에는 국제적 공조체제의 구축과 전문가양성 및 남용의 가능성을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인도의 전

31)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DDA관련 지재권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2003.3), 4면.

32) 동심사기준은 미생물을 ‘바이러스, 세균, 방선균, 원생동물, 효모, 곰팡이, 버섯, 단세포조류, 동식물의 분화되지 않은 세포 및 조직 배양물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지식 보호정책³³⁾을 참고하여 양자를 절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WTO/DDA 자재권 협상의 미래

TRIPs 협정을 종결지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세계적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자회사 및 직원들을 동원한 감시를 통하여 각 WTO 회원국에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TRIPs 협정의 부작용이 개발도상국에서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협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또한 교육적 프로그램 및 지원에서부터 경제적 압력 및 개도국 국내법의 민사 및 형사적 조항의 법적 절차에 의존에 이르기까지 여러 전략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반대에 맞서게 되었다.

과거 1999년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가 실질적인 이슈에 있어서 아무런 협의 없이 끝났고, 선진국들은 집행 및 이행 쟁점에 이외에는 어려한 검토로 TRIPs 협정의 조항들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TRIPs 협정 전문 강화의 방향으로는 개정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개도국들은 기설정 의제의 논의와 더불어

특히 생물학적 다양성에 대한 TRIPs 협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

TRIPs 협정에 대한 반대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분야는 생명공학 특허와 의약품 특허이다. 이 두 분야에서 시민사회 운동은 추진력을 얻고 있다.

TRIPs 협정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이러한 운동은 WTO 내에서 TRIPs 플러스 보호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에 활발한 저항을 안겨다 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그룹들은 협상 자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그 동안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³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자, 이와 관련된 DDA 협상개시와 더불어 강화된 개도국의 협상력에 대하여 미국, EC 등 기존 협상 주도국들이 이를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³⁵⁾

특히 미, EC는 과거 UR 협상 때와 같이 양대 협상축이 합의하면 개도국들은 협상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개도국들이 G-20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협상축으로 등장하자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개도국의 협상 주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³⁶⁾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 주변에만 머물러

33) 2001년 인도는 농업군락에서 전승되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물변종 및 농민권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y and Farmer's Rights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에는 농민권의 인정, 이익공유, 농업공동체의 기여에 대하여 그 공동체에 부여되는 보상, 무과실권리침해에 대한 기소면제, 사육자의 연회비부담, 유전자기금(Gene Fund)의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인도는 2002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전통지식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다. 게다가 인도는 2003년 현재 정부차원에서 약용식물에 관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도정부는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약용식물지식을 CD ROM에 저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식물을 이용한 민간치료요법을 기록한 문헌은 물론이고 민족 속에서 전해내려 오는 요법들도 채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될 예정이다.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종결한 후에는 다른 나라의 특허청에 전달하여 이를 선행기술로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 한다. (Gerard Bodeker, Tradition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igenous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Benefit Sharing, 11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790, (2003), 802면)

34) Susan K. Sell, *Private Power, Public Law :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139면.

35)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5차 회의결과 보고”, 5면.

36)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앞의 자료, 5면.

있었던 새로운 요소가 TRIPs 협정의 영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여파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계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일반의약품 제조업자와 같은 산업 그룹과, 비정부기구(NGO)와 같은 시민사회 그룹, 농부 그룹 및 빈곤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TRIPs 협정의 부작용에 대한 잠재력을 인식하게 된 토착민 대표자들, 시민사회 그룹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UN 무역 및 개발회의(UNCTAD)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세계적 기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에는 정보 결여 및 자원 부족으로 TRIPs 협정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기꺼이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개도국 등을 포함한다.³⁷⁾

여기에서 산업계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미국 등 선진국의 모방의약품(generic drugs 혹은 copy drugs라고도 한다.)³⁸⁾ 제약회사들이 가장 눈에 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이후로 이들은

TRIPs 협정의 현재적 영향 및 미래의 개혁에 대한 논쟁에서 더 조직적이고 국제적 규모로 모방의약품 산업계의 의견³⁹⁾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다.⁴⁰⁾

보건, 개발 및 환경 문제에 있어 TRIPs 협정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는 TRIPs 협정을 이끌어 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동안 거의 전무했던 의견을 점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NGO는 적어도 WTO가 시민사회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 활동의 정당성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WTO 협상 라운드에서 훨씬 더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⁴¹⁾ 이에 대한 예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국제기구는 특히 의약품의 높은 가격의 영향력에 대한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Oxfam과 같은 NGO와 함께 이러한 기구들은 각국에서 HIV와 같은 유행성 전염병의 치료를 위한 약품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및 강제실시권의 허용에 대한 남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⁴²⁾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 4월 WHO-WTO 공동 세미나 개최⁴³⁾

37) Dusan Matthews, *Globalis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he TRIPs Agreement*, Routledge, London(2002), 2면.

38) 신물질이나 신제형으로 만든 신약을 일컬어 흔히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brand name drug"으로 부른다. 신약의 원개발자가 특허를 내지 않거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들이 같은 성분을 다른 제조기법을 이용해 모방제품을 만드는데 이를 "제네릭(generic)" 의약품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는 속칭 "카피액" "복제약" "후발 모방의약품" 등으로 부르는데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을 통해 오리지널 약과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상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제네릭은 오리지널 약처럼 보호받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50~70%선이다.

39) 저렴한 가격의 차방전 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업자들의 거센 요구에 의해서 일반의약품(generic drugs) 제조업자들은 제약회사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모든 차방전 약품 중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계속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제약회사에 대한 일반의약품회사의 치열한 경쟁"(Knight Ridder/Tribune Business News, 2003년 10월 13일)

40) Matthews, supra note[37], at 131.

41) Maura Blue Jeffords, *Turning the Protester Into a Partner for Development : The Need for Effective Consultation Between the WTO and NGOs*, Brooklyn Law School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2003), at 986; Matthews, supra note[37], at 131.

42) WHO news letter, "TRIP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Medicines," December 2002, Issue No. 8, (http://www.wpro.who.int/images/news/pdf/nletter_ARV8_Dec2002.pdf) ; WTO press release, "Experts: affordable medicines for poor countries are feasible" 11 April 2001, (http://www.wto.int/english/news_e/pres01_e/pr220_e.htm); Matthews, supra note[37], at 133.

43) WTO press release, "WTO, WHO secretariats workshop on affordable drugs", The 8-11 April 2001 in Norway, (http://www.wto.int/english/tratop_e/TRIPs_e/trn_hostbjor_e.htm)

및 2001년 동안 TRIPs 이사회에서의 의약품 접근과 지재권에 대한 토의를 통해⁴⁴⁾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 채택으로 이어지게 했다.

TRIPs 협정의 개정 시도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는 중기적인 면에서 TRIPs 협정의 실질적인 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협상의 실질적 진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일반이사회에서 향후 문제를 논의할 것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 EC 통상각료 교체 등 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 재개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⁴⁶⁾

5. 맷음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지재권 관련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재권에 관한 국제 통상 무대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과 개도국이 더욱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결국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입장을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거시적인 산업정책에 따른 입장으로 국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WTO/DDA 지재권 협상의 제는 단순히 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1-2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특허청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문광부 등을 포함하여 이를 국제 무대에서 대표하는 외교통상부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률가, 경제학자와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여론에 대한 수렴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특허청이 DDA 지식재산권 분야 민관합동 포럼을 설치하여 2003년 5월 27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연구소 차원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WTO분과 TRIPs 위원회 설치하여 2003년 6월 26일에 첫 회의를 가졌고, 지식재산권연구센터에서도 사이버 TRIPs 연구회(www.kiprc.re.kr)를 개설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자료 및 정보 제공 뿐 아니라 활발한 의견 교환으로 중단기적으로는 해당 분야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희망한다.

발특2004/6

44) WTO press releases, "TRIPs Council's discussion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ss to Medicines'" (20 June 2001), (http://www.wto.int/english/tratop_e/TRIPs_e/council/jun01_e.htm);

"Members discuss drafts for ministerial declaration," TRIPs COUNCIL WEDNESDAY 19 (AND 21) (SEPTEMBER 2001), (http://www.wto.int/english/news_e/news01_e/TRIPs_drugs_010919_e.htm)

45) Matthews, *supra note[37]*, at 138.

46)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5차 회의결과 보고", 5면.